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구성〉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13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운영 추가 (안 제10조제3항제3호의2)	2
2. 국외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구성(안 제10조제3항제4호의2 및 제33조제2항) ..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호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7. 2.
3. 회 부 일 : 2026.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이에 더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안 제10조 및 제33조).

III. 검토의견

1.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운영 추가 (안 제10조제3항제3호의2)

개정안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10조제3항제3호의2).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립과 운영) ①·② (생략)	제10조(설립과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2.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u>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4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을 규정하고 있음.¹⁾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은 해외 한국실 설치 사업 및 우리문화유산 해외 전시 지원 등 국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 기준 해당 사업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 국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내용 >

(단위 : 백만원)

주체	사업명	회계·기금	사업내용	예산액
국립중앙박물관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지원	일반회계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비 지원, 실태조사 용역, 점검 등	2,303
	우리문화유산 국외 전시 및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 문화유산 국외 전시 개최 및 외국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지원	847
국립현대미술관	국내외 미술관 교류	일반회계	미술관협력망 구축 및 국제 교류, 한국미술 해외 순회전	96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화 해외 전시 및 한국실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 민속문화 소개를 위한 한국실 설치·운영 및 한국민속문화 특별전 개최	262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②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국립중앙박물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 제10조²⁾는 국외박물관 한국실 설치·운영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립중앙박물관등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운영 등 교류·협력 업무를 국립중앙박물관등의 업무로 명시하여, 국립중앙박물관등의 해외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 관람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근거 마련은 한국 전통문화 및 박물관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설립과 운영) ③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⑤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대표박물관으로,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및 학예인력 양성에 필요한 역량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전담 수행기관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개정안은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실 설치·운영’의 주체로 여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을 추가하는 등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291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외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구성(안 제10조제3항제4호의2 및 제33조제2항)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현황,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의 박물관·미술관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며, 국외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을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로 하는 내용임(안 10조제3항제4호의2 및 제33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립과 운영) ①·② (생략)	제10조(설립과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생략)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설>	4의2. 국외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① -- ----- ----- -----

현행	개정안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u>박물관·미술관 협력망</u>(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② (생략) ③ <u>협력망의</u>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u>국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u>(이하 “<u>국내협력망</u>”이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국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상호 교류·협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u>(이하 “<u>국외협력망</u>”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u>박물관·미술관 자료의 현황</u> 2. <u>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상호 대여 체계 구비</u> 3. <u>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u>국내협력망 및 국외협력망의</u>----- -----.

현행법 제33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제로서 전산 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유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³⁾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현행법 시행령 제20조⁴⁾는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등이 되고,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박물관 협력망은 2006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전국 16개 지역 대표관을 지정하여 구성되었으나, 이후 국립민속박물관이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근현대사박물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미술관협력망은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15개의 지역대표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국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참고1. 국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구축 사업 현황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체계와 유사한 형태로 국외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성하도록 하고, 국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박물관등의 업무에 추가함으로써,

현재 국립중앙박물관등이 한국실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국외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과의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류의 확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분야에서의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다만,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박물관 협력망은 자발적 필요에 의한 유사 협력 네트워크가 지속 발생하면서 협력망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⁶⁾

국외 박물관·미술관과의 교류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개별적으로 각각의 국외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⁷⁾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입법화되어도 국외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 실제로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실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임.

6)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p.201.

7) 국립중앙박물관-우피치미술관(‘26.6월), 국립중앙박물관-中고궁박물관(‘25.10월) 등

아울러, 안 제33조제2항 각 호의 국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 수행하는 기능 중 제1호인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현황’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박물관 분야 국외 협력과 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976년부터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이러한 국제기구와 별도로 국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 및 내용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국내 협력망과 같은 내용으로의 입법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1

국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구축 사업 현황

□ 국립중앙박물관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26년 예산
지방박물관 브랜드 활성화 (지역 공립박물관 순회전시 개최)	소속관, 공립박	소속관-공립박물관 연계 국가지정 문화 유산 전시 개최 (26년 6회×128.5백만원 → 27년 8회×221.3백만원)	771 (실행예산 1,100)
지방박물관 브랜드 활성화 (지역박물관 협력망 고도화)	소속관, 공·사립박· 대학박	소속관-지역 국·공·사립·대학 박물관 간 협력 사업 추진 (27년 신규, 14개관×714백만원)	-
문화격차해소 지방순회전	공립박물관,공립 미술관	국외문화 블록버스터 전시 순회 개최(26년 2회×1,350백만원 → 27년 2회×1,550백만원)	2,700

□ 국립현대미술관

○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통합관리체계 구축

- (통합 컨설팅) AMS 도입기관의 운영 현황·인력·환경 종합 분석 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현장 진단** 및 AMS 활용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한 **현장 교육** 운영
- (지원대상) 총 5개 공립미술관* 선정 및 지원
 - * 경남도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 (지원내용) 선정기관 대상 미술 아카이브 관련 이론·실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6~10월중, 2일간)
- (단계별 교육) 아카이브 관리 담당자 대상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표준매뉴얼 및 자가점검표 개발 및 보급) AMS 운영 절차에 맞춘 표준 운영 매뉴얼·자가점검표 개발 및 보급
-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국공립 미술관 **협의체 운영**(반기별 정례회의) 및 아카이브 담당자 워크숍(11.6.)을 통한 아카이브 협력체

계 마련

○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보급 및 기술지원

－ (보급대상) 전국 공립미술관

* 기 보급 기관 57개(「'25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공립미술관 총 79개)

－ (지원내용) △지역미술관 소장품 관리 체계화를 위한 미술품 표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보급 및 기술 지원 △대국민 공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연계 지원

－ (배포) 공립미술관 대상 시스템 접속주소와 기관 계정 별송(연중 수시)

－ (주요기능)

- 미술품 및 이미지 일괄등록 등 등록 편의기능
- 간편검색 및 전문검색 등 검색기능
- 기관 맞춤형 분류체계(코드)관리 기능
-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기관 홈페이지 연계를 위한 API 제공

－ (기대효과) 미술관 협력망 기관 간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기반을 마련하여 미술관 네트워크 활성화

○ 미술아카이브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및 기술지원

－ (보급대상) 전국 공립미술관

* 기 보급 기관 22개(「'25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공립미술관 총 79개)

－ (지원내용) △지역미술관 미술아카이브의 표준화된 관리 지원을 위한 미술아카이브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및 기술 지원 △미술지식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국·공립 미술관 협력 강화

－ (배포) 공립미술관 대상 시스템 접속주소와 기관 계정 별송(연중 수시)

－ (주요기능)

- 수집기록 및 미술관기록 등록 및 관리
- 통합검색 및 통계 기능
- 아카이브 열람·대여·보존 관리 기능
- 각종 아카이브 지침 및 시스템 매뉴얼 제공

- (기대효과) 미술 아카이브의 표준화된 관리 지원을 통한 활용 역량 강화
- 지역대표관 관장회의 개최
 - (참석대상) 전국 16개 지역대표관 관장
 - (시기/장소) 2026년 연중 총 2회 / 서울관 등
 - 제1차 관장회의('26.4.30./ 서울관 대회의실), 제2차 관장회의('26.9월중 개최 예정)
 - (주요안건) 협력망 사업, 지역동행 사업 등 지역미술관 협력 사업 소개, 지역미술관 현안 공유 및 상호 협력방안 제안 등
 - (기대효과) 미술관 협력망 활성화 및 국·공립미술관 교류 증대

참고2

해외박물관 한국실 현황 (22개국 70개관)

연번	국명	박물관명	한 국 실 현 황				
			규모(m ²)	형태	개관연도	소장품	비고
1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167	단독실	1998	554점	1998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삼성)
2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350	단독실	1991	980점	1991년 자체 설치 2003년 개선(한국국제교류재단)
3		클리블랜드박물관	130.06	단독실	2013	453점	2013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2016년 개선(국립중앙박물관)
4		필라델피아박물관	70	단독실	1992	438점	1992년 자체 설치 2015년 개선(국립중앙박물관)
5		남가주대학교 퍼시픽아시아박물관	66	단독실	2007	260점	2007년 자체 설치 2012년 개선(한국국제교류재단)
6		뉴욕박물관	63	단독실	1989	708점	1989년 자체 설치
7		피바디에섹스박물관	232	단독실	2003	1,868점	2003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2007년 개선(국립민속박물관) 2025년 재개관(국립중앙박물관)
8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84	단독실	1993	780점	1993년 자체 설치 2011년 개선(국립중앙박물관)
9		보스턴박물관	111	단독실	1982	1,070점	1982년 자체 설치 2012년 개선(한국국제교류재단)
10		포틀랜드박물관	72	단독실	1997	162점	1997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2013년 자체 개선
11		시카고박물관	27.5	단독실	1920	300점	1920년 자체 설치
12		플로리다대학교 새뮤얼한박물관	95	단독실	2012	242점	2012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2020년 개선(국립중앙박물관)
13		오리건대학교 조던슈니처박물관	122	단독실	2005	500점	2005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14		코넬대학교 허버트존슨박물관	14	단독실	2011	400점	2011년 자체 설치
15		미네소타대학교 와이즈만박물관	56	단독실	2011	594점	2011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2015년 개선(국립중앙박물관)
16		호놀룰루박물관	84	단독실	1927	1,065점	1927년 자체 설치 2001년 개선(한국국제교류재단)
17		휴스턴박물관	178.5	단독실	2007	65점	2007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18		미니애폴리스박물관	80	단독실	1998	164점	1998년 자체 설치
19		덴버박물관	185	단독실	1971	287점	1971년 자체 설치 2021년 자체 개선
20		브루클린박물관	187.6	단독실	1974	700점	1974년 자체 설치 2017년 개선(국립중앙박물관)
21		미시간대학교박물관	32.5	단독실	2009	435점	2009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2016년 개선(국외소재문화재재단)

연번	국명	박물관명	한 국 실 현 황				
			규모(m)	형태	개관연도	소장품	비고
22		데이턴박물관	60.38	단독실	1997	64점	1997년 자체 설치 2020년 개선(국립중앙박물관)
23		디트로이트박물관	88.3	단독실	1927	192점	1927년 자체 설치 1996년 자체 개선 2018년 개선(국립중앙박물관)
24		버밍햄박물관	46	단독실	1993	160점	1993년 자체 설치 2002년 개선(한국국제교류재단)
25		버지니아박물관	65	단독실	2012	202점	2012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26		뉴욕 자연사박물관	4	부분전시	1980	1,077점	1980년 자체 설치 1998년 자체 개선
27		워싱턴대학교 버크박물관	4	부분전시	1997	321점	1997년 자체 설치
28		하버드대학교 박물관	4	부분전시	20세기 초	724점	20세기 초 자체 설치 2014년 자체 개선
29		마이애미대학교 로위박물관	2	부분전시	1952	87점	1952년 자체 설치
30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330	단독실	1983	18,192점	1983년 자체 설치 2014년 재설치
31		고려미술관	331.56	단독실	1988	1,700점	1988년 자체 설치
32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	481.75	단독실	1982	1,496점	1982년 자체 설치 1999년 공간 확대
33		덴리대학 덴리참고관	-	코너	2001	2,808점	2001년 자체 설치
34		도쿄국립박물관	502	단독실	1968	3,957점	1968년 자체 설치
35		일본민예관	-	단독실	1936	1,680점	1936년 자체 설치
36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 인류학박물관	100	코너	1957	2,622점	1957년 자체 설치 2012년 자체 개선
37		상트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90	단독실	1925	1,825점	1925년 자체 설치 2015년 자체 개선
38		쾰른동아시아박물관	85	단독실	1995	400점	1995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39		구텐베르크박물관	100	단독실	2000	500점	2000년 자체 설치 2012년 전시품 교체(청주고인쇄박물관)
40		함부르크예술공예박물관	30	코너	1997	100점	1997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41		훔볼트포럼 아시아박물관	60	단독실	2021	160점	2021년 자체 설치
42	영국	영국박물관	315	단독실	2000	3,200점	2000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2014년 개선(국립중앙박물관)
43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130	단독실	1992	1,000점	1992년 설치(삼성)
44		더럼대학교 동양박물관	56	단독실	2013	1,141점	2013년 자체 설치
45		케임브리지대학교 피츠윌리엄박물관	76	단독실	1990	500점	1990년 설치(현대)
46		옥스퍼드대학교 애쉬몰리안박물관	-	부분전시	2009	20점	2009년 자체 설치
47		스코틀랜드국립박물관	-	코너	1996	340점	1996년 자체 설치 2019년 자체 개선

연번	국명	박물관명	한 국 실 현 황				
			규모(m)	형태	개관연도	소장품	비고
48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104	단독실	1990	700점	1990년 자체 설치 2010년 개선(한국국제교류재단)
49		표트르대제 인류민속학박물관	42	코너	1953	523점	1953년 자체 설치 1996년 개선(주상트페테르부르크대사관) 2010년 개선(한국국제교류재단)
50	캐나다	로얄온타리오박물관	221	단독실	1999	1,730점	1999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2012년 개선(국립중앙박물관)
51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 인류학박물관	20	코너	2010	546점	2010년 자체 설치
52	프랑스	기메박물관	357	단독실	1893	1,408점	1893년 자체 설치 2001년 개선(한국국제교류재단) 2015년 자체 개선
53		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	-	코너	2011	275점	2011년 자체 설치 2015년 자체 개선
54	네덜란드	국립세계사박물관	-	코너	2001	700점	2001년 자체 설치
55		네덜란드국립박물관	-	코너	2013	32점	2013년 자체 설치
56	뉴질랜드	오클랜드박물관	-	코너	1970	62점	1970년 자체 설치 2008년 재개관
57	덴마크	덴마크국립박물관	65	단독실	1966	1,350점	1966년 자체 설치 1998년 자체 개선
58	멕시코	멕시코 국립세계문화박물관	281	단독실	2000	240점	2000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2015년 개선(국립민속박물관) 2019년 개선(국립무형유산원)
59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국립박물관	80	코너	2004	43점	2004년 설치(국립민속박물관) 2014년 개선(국립민속박물관)
60	스웨덴	스웨덴동아시아박물관	50	단독실	2012	543점	2012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61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박물관	116	단독실	1993	647점	1993년 설치(광주지역 문화단체)
62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국립박물관	-	부분전시	2006	300점	2006년 자체 설치
63	이탈리아	이탈리아 문명박물관	40	단독실	2010	200점	2010년 설치(한국국제교류재단)
64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박물관	114	단독실	2008	204점 (전시품)	2008년 설치(국립민속박물관) 2012년 자체 개선
65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국립중앙박물관	30	코너	2003	127점	2003년 설치(국립민속박물관) 2014년 자체 개선
66	포르투갈	동양박물관	20	코너	2008	96점	2008년 자체 설치
67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박물관	-	부분전시	1990	42점	1990년 자체 설치 2003년 자체 개선
68		빅토리아국립박물관	82	코너	2017	220점	2017년 자체 설치
69	폴란드	바르샤바민속박물관	169	코너	2018	40점	2018년 설치(국립민속박물관)
70	베트남	베트남민족학박물관	900	단독실	2022	405점	2022년 설치(국립민속박물관, 문체부)

참고3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현황 등(※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연도	소요 예산: 원화(달러)	지원 대상 기관
2009	151,450,000원 (130,000달러)	(미국) 프리어새클러박물관
2010	394,665,100원 (336,699달러)	(미국) 프리어새클러박물관
2011	575,736,000원 (489,346달러)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박물관 (일본) 고려미술관 (캐나다) 로얄 온타리오박물관
2012	211,012,210원 (189,129달러)	(미국) 샌프란시스코아시아박물관, 휴스턴박물관, 보스턴박물관, 뉴욕 박물관 (이탈리아) 국립동양예술박물관
2013	495,823,400원 (466,858달러)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프랑스) 세브르국립도자 박물관
2014	625,000,000원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필라델피아박물관, 오리건대학 조던슈니처박물관, 포틀랜드박물관, 호놀룰루박물관, 서던캘리포니아대학 퍼시픽아시아박물관, 미네소타대학 와이즈만박물관
2015	662,300,000원	(미국) 클리블랜드박물관, 브루클린박물관, 보스턴박물관 (캐나다) 로얄 온타리오박물관 (독일) 쾰른동아시아박물관,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2016	286,800,000원	(미국) 프리어새클러박물관, 디트로이트박물관, 포틀랜드박물관 (스위스) 리트베르크박물관
2017	260,821,000원	(미국) 디트로이트박물관, 시카고박물관, 오벌린대학 알렌기념박물관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2018	181,769,230원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플로리다대학 새뮤얼한박물관, 브루클린박물관, 서던캘리포니아대학 퍼시픽아시아박물관
2019	119,775,400원	(미국) 데이튼박물관, 플로리다대학 새뮤얼한박물관,
2020	9,350,000원	(미국) 버밍햄미술관
2021	87,905,480원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시카고박물관, 플로리다대학 새뮤얼한박물관, 워싱턴대학 버크자연사박물관
2022	388,113,180원	(미국) 피바디에섹스박물관, 남가주대학 퍼시픽아시아박물관 (영국) 스코틀랜드국립박물관
2023	308,688,120원	(영국) 더럼대학 동양박물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샌버너디노 RAFFMA (네덜란드) 네덜란드국립박물관 (일본) 26성인기념관
2024	239,494,930원	덴마크) 덴마크국립박물관 (미국) 샌프란시스코아시아박물관 (스위스) 리트베르크박물관
2025	44,518,200원	(영국) 더럼대학 동양박물관
합계	5,043,222,250원	

□ 우리문화유산 국외전시

연도	전시국(기관)	전시명	전시내용
'10. 6. 1.~ '10. 9. 5.	러시아 (에르미타주박물관)	술 숲에 부는 바람 한국 미술 5,000년전	• 금관 등 237건 354점 • 시대흐름별 주요테마 중심의 전시로, 1991년 스키타이황금전에 대한 교환전시
'11. 10. 27.~ '12. 2. 12.	호주 (파워하우스박물관)	장인정신-한국의 금속공예	• 천마총금관 등 금속공예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 141점 전시 • 한·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일환
'12. 8. 16.~ '12. 11. 25.	브라질 (상파울루미술관)	한국도자 600년전	• 조선시대 분청사기, 백자, 현대도자 등 96점 •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기념, 브라질 최대의 문화도시인 상파울로에서 우리 문화재 소개
'13. 6. 19. ~ '13. 9. 29.	터키 (툽카프궁박물관)	아름다운 한국 문화재	• 금령총 금관 등 126건 153점 • 2012년 터키문명전에 대한 교류전시
'13. 10. 25. ~ '14. 1. 12.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조선 왕실 잔치를 열다	• 화성능행도 등 총 9개 기관 89건 116점 • 조선 왕실과 사가의 의례와 잔치의 의미, 관련 회화·서적·공예품 등을 미국 사회에 소개
'13. 10. 29. ~ '14. 2. 23.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황금의 나라 신라	• 반가사유상 등 93건 132점 • 5~9세기 신라의 공예품과 미술품을 소개함으로 우리 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
'14. 3. 2 ~ '15. 1. 11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휴스턴미술관)	조선미술대전	• 청화백자용문호 등 175점 323점 • 지정문화재 15점을 포함한 조선시대의 왕실과 사대부, 민간층에서 향유한 회화, 서예, 도자기, 가구, 칠공예, 금속공예, 조각, 복식 등으로 구성
'16. 4. 27 ~ 6. 20 '16. 7. 29 ~ 11. 6.	프랑스(그랑팔레) 러시아 (에르미타시박물관)	흙 불 혼 한국도자명품전	• 청자구룡형주자 등 전통도자 199건 307점 및 현대작품 17건 37점 등 한국 도자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념 일환 • 러시아 에르미타시박물관과 교환전시
'17. 4. 22~7. 23.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조선왕조의 예술과 문화	• 서직수 초상 등 120건 248점 • 서화, 도자, 공예품 등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 민간이 향유한 각종 예술과 문화 소개
'18. 12. 19.~'19. 3. 7.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국립박물관)	한국의 역사와 문화	• 서봉총 금관 등 260건 557점 • 선사~조선시대 우리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소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중동권의 이해 제고 •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 교환전시
'19.9.21. ~'20.3.22.	미국 (프리어&새클러 박물관)	스포츠라이트전 한국의 불상	• '17년 본부지원협약에 따른 학술전시로, 우리관 대표 소장품을 집중 조명하는 스포트라이트전 • 목조관음보살상 및 복장물 등 1건 72점 • 총2회 개최(2019년, 2021년)
'19.10.10. ~'20.1.12.	폴란드 (바르샤바국립박물관)	한국미술: 삶과 영혼에 깃들다	• 한-폴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전 • 서봉총 금관 등 244건 391점 전시 • 동유럽권 최초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대규모 특별전 • '15년 "폴란드 천년의 예술"교환전시
'21.2.2. ~ 3.7.	중국 (상하이박물관)	한·중 소띠 교류전	• 소띠 해를 기념하여 한·중 양국의 일상생활 속 소 이미지와 의미 비교 전시 • 은상감철제화로 등 2건 2점 출품(상하이박물관 소장 봉문희귀 등 5건 6점과 연합전시)

연도	전시국(기관)	전시명	전시내용
'21.10.16. ~ 8.21.	네덜란드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한국, 풍요로운 과거로의 길	- 한국의 토기와 도자기를 중심으로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전시 - 삼국~조선시대 토기, 도자기 등 총 55건 92점 작품
'22. 5. 21 ~'22. 10. 31.	미국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한국의 치미	- 치미를 통해서 보는 한국의 고대 건축 문화 - 전시품: '미륵사지 치미' 등 20건 20점
'22. 10. 6 ~'23. 2. 20.	콜롬비아 (황금박물관)	전통의 올림	- 한국 도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통해 한국인의 삶과 문화 조명 - 전시품: 선사~조선시대 토기와 도자전(청자상감 국죽문매병 등 125건 226점)
'23. 12. 3. ~'25. 12. 7.	미국 (덴버박물관)	무심한 듯 완벽한, 한국의 분청사기	- 조선 분청사기의 조형미 및 미술사적 중요성 조명 - 전시품: 분청사기박지모란초문호 등 45건 92점
'24. 11. 1. ~'25. 2. 3.	미국 (시카고박물관)	한국의 미술	- 한국실 확장 재개관 기념 특별전시 및 상설전 대여전 - 전시품: 서봉총 금관 등 14건 24점 장·단기 대여
'25. 3. 2.~6. 8.	미국 (덴버박물관)	한국의 달항아리, 다시 차오르다	- 한국 문화 속 달항아리의 전통과 현대적 표상을 조명 - 전시품: 백자대호 3건 3점 대여
'25. 3. 15.~8. 10.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백 가지 행복 -한국문화특별전	-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문화유산의 정수를 소개하고 한국 문화의 흐름 전반을 조명 - 전시품: 금관총 금관 등 184건 349점
'25. 11. 15. ~'26. 2. 1.	미국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	- 고 이견희 회장 기증품 첫 번째 국외순회전 - 전시품: 인왕제색도 등 172건 297점

□ 국립민속박물관 해외전시 현황

연번	연도	국가	전시기관	전시 내용
5	2017.12.	독일	함부르크민족학 박물관 (현재 MARKK)	'우리 코리아'전 개최. 대동여지도, 미인도, 김치냉장고 등 전통~현대 생활자료 280점 전시
4	2019.11.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특별전 『매갈-한국인의 삶에 스민 색깔』 해외전시 개최 오방장 두루마기 등 210여 점 전시
3	2022.12.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민족학박 물관	한국실 『한국과 베트남의 아름다운 만남』 문갑, 김치냉장고 등 전통~현대 생활자료, 한국의 사계 실감영상 등 400여 점 전시 *본부 예산 지원
2	2024.7.	호주	주시드니한국문 화원	'매듭, Korean Knots' 해외 순회전 전통매듭공예 재료와 제작과정 및 생활 속 매듭과 현대 응용작품 등 130여 점 전시
1	2024.11.	필리핀	필리핀 메트로폴리탄 마닐라박물관	'매듭, Korean Knots' 해외 순회전(2차), 전통매듭공예 재료와 제작과정 및 생활 속 매듭과 현대 응용작품 등 130여 점 전시